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지침
- 요약 중 개인창작활동종사자관련 부분 발췌분

1. 조사명칭: **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(2020.12.31 기준일)**
2. 조사 기준일 : **2020년 12월 31일 (재직)기준** **<2021년 취업통계조사 시: 2021년 12월 31일 기준>**
3. 조사 대상자 : **2019년 8월 및 2020년 2월 졸업자**

<2021년 취업통계조사 시:2020년 8월 및 2021년 2월 졸업자>

● 개인창작활동종사자

가. 정의 : 조사 기준일(2020.12.31.)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졸업 이후부터 조사 기준일(2020.12.31.)까지 개인작품 창작활동 실적이 있는 자

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 조건	
영상 제작물	· 영상제작물로 상영된 시나리오 및 대본작성에 참여한 자 · 오프라인 상영 · 게시를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제작물에 참여한 자 (영화 · 영상 출연자 및 스태프 포함)

나. 증빙자료

실적	증빙자료	비고
영상제작물	· 영상제작기관과의 계약서 (영상물, 시나리오 등의 내용이 확인 가능해야 함)	제출

※ '공연, 전시, 영상제작물' 항목은 증빙자료 확인서 추가 제출

- 시스템에 업로드 할 증빙자료가 원본과 동일하며 개인창작활동 사실에 허위 및 위변조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로, 학과별 책임자(담당교수 또는 상위보직자)가 서명하여 제출함
- **미제출 시 현장점검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**

다. 유의사항

○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인정 심의위원회에서는 직업인으로서의 예술활동 인정여부를 정성평가하며, 심의위원 및 세부심의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

○ 졸업자의 학과 및 계열과는 무관하게 개인이 참여한 창작활동 실적 위주로 인정됨

○ 졸업을 위한 작품 · 공연(졸업작품전 관련) 및 재학 중 과제 등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

○ 개인창작활동종사자 정의에 적합하지 않고, 유효하지 않은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각 분야별 심의위원회에서 불인정된 자는 취업자(개인창작활동종사자)에서 제외하며, '기타'로 일괄 처리함